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19. 조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7.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

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대훈)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1조¹⁾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상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105조²⁾는 특수학교도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1)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특례에 관한 규정이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만을 근거로 특성화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성화중학교³⁾, 특수목적고등학교⁴⁾, 특성화고등학교⁵⁾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바,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또는 직업교육 등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재능 있는 장애학생들이 예술, 체육 또는 직업교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학생의 창의력 개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2학기 개교 예정인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및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각각 직업교육과 예술교육, 체육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계획되었으므로⁶⁾, 개정안에 따라 해당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법」 제17조⁷⁾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하나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6)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의 세부과제에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포함하였는데, 이에 따라 다음 3곳의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됨.

사 업 명	학급수	학생수
◦ 부산대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21학급 (중 9학급, 고 12학급)	138명 (중: 54명, 고: 84명)
◦ 공주대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18학급 (고 18학급)	126명
◦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21학급 (중 9학급, 고 12학급)	138명 (중: 54명, 고: 84명)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개정안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이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성화특수학교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법 제17조의 문구와 같이 ‘학생’보다는 ‘특수교육대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교육법」상 타 조항과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특성화중학교 학생선발의 경우에도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4항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시·도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와 과학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한하여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필기고사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술계열·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학생선발 과정에서 별도로 필기시험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③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특수학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붙임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수정 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수정안 본문, 수정안조문대비표)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지정·운영’을 ‘지정·고시’로 변경하는 등 자구수정이 있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5.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학생”을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특수교육대상자”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 전단 중 “학생의”를 “특수교육대상자의”로, “학생을”을 “특수교육대상자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생략) <u><신설></u>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 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 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이하 “특성화특수 학교”라 한다)를 지 정·운영할 수 있 다. 이 경우 특성화 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 로 정한다.</u>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③ <u>제2항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 생을 선발할 수 있 다. 이 경우 학교의</u>	③ ----- ----- ----- ----- <u>특수교육대 상자의</u> ----- ----- <u>특수교육대상 자를</u> -----

	<u>장은 필기시험에</u> <u>의한 전형을 실시</u> <u>하여서는 아니된다.</u>	--. ----- ----- ----- -----.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 음)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 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의 수준에 미달하 지 아니하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 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의 수준에 미달하 지 아니하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⑤ (개정안과 같 음)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 용부담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 용부담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⑥ (개정안과 같 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를 “제6조제4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생략) <u><신설></u>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현행과 같음) <u>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 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u>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② (생략)</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u>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u>	<u>⑤ 제4항에-----</u> ----- ----- ----- -----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

⑥ 제4항에-----제5항에-----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

② (현행과 같음)